



컨테이너 손상확인서

Continaer No.			
반납일시		반납장소	
화주명			
내품명			

상기 컨테이너는 당사 반납 당시 DAMAGE 상태로 반납 되었으며, 추후 이는 DAMAGE 비용 청구의 증빙자료로 사용 될 수 있음을 확인 합니다.

◎ 컨테이너 수리비 보상 책임자 (반드시 실제 수리비 부담 담당자께서 작성하셔야 합니다.)

회사명			
담당자(성함/직위)		TEL.	
핸드폰번호			
E-MAIL 주소			
직인명판	(인)		

<< 공 지 >>

- CONSIGNEE(수화인, 구매자)가 B/L을 인도 받는 시점에서 SHIPPER(송화인, 판매자)의 화물에 대한 권리 및 화물에 대한 권리 및 컨테이너 관리와 관련된 모든 책임과 의무가 함께 이전됩니다.
(즉 SHIPPER의 잘못으로 인한 손상의 경우도 별률상 CONSIGNEE의 공동책임이며, 손상 비용 지불 후 SHIPPER으로 구상청구하여 보상 받으셔야 합니다.)
- 국내 상법 814조에 의거하여 청구기간은 1년간 유효합니다.
- **컨테이너 수리비 면제 조건** : 선적지에서의 공컨테이너 수취부터 DAMAGE가 입증된 경우, 선적지에서 수리비 지불 또는 면제 승인되어 당사와 관련 내용이 확인이 된 경우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.
- 납부하신 금액은 선적지에서의 수리비 할인 또는 면제 승인되어 당사와 관련 내용이 확인이 된 경우 환불 가능합니다.
- 손상 컨테이너가 많은 경우 별도의 서류를 본 양식에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십시오.
- **손상확인서 제출 시** 반드시 한부는 아래 TSLINES M&R팀 메일로 보내셔야 합니다.
- 기타 손상컨테이너와 관련한 이슈는 아래 TSLINES M&R팀 메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.

TSLINES M&R TEAM E-mail : krmnr@tslines.co.kr